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제정안

##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량의 가연성 화물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재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해당 없음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 가목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3조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 가. 화재예방 부분

- 1)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發火源)에 대한 제거와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화원(發火源)과 가연물(可燃物)은 서로 간의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한 화재예방 조치(「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은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
- 2)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보관 금지 등 보관물품 관리 조치
- 3) 가연물 폐기물 등이 쌓이지 않고 적절히 보관되다가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연성 폐기물 관리 조치
- 4) 누전·합선·용량초과·과열·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에 관한 수시점검 조치
- 5) 지게차 등 보관물품의 이송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행 및 이송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설비·송전선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 6) 화기취급 작업자는 화기를 취급하기 전에 작업 시간, 장소, 작업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조치
- 7) 냉장·냉동 창고의 경우 냉장·냉동 시스템의 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시스템의 운전·점검 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

#### 나. 화재대응 부분

- 1) 물류창고 내 경보설비의 화재발생 알림, 근무자의 화재목격 통지 등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통보계획 및 조치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인 창고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
- 3) 소방시설인 소화기, 발신기, 유도등 등의 위치가 랙(받침대)·선반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물류창고 내 임의 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위치 표시 조치

- 4)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이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
- 5)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셔터와 방화스크린셔터가 폐쇄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
- 6) 피난용 출입문,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하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도록 하는 물건 적치(쌓아 둠) 방지 조치

#### 다. 화재대비 부분

- 1) 근무자에 대한 연1회 이상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각 구역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방시설 및 자동烟火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피난 안내교육 실시(단기 근무자는 근무시작 전 피난 안내 실시)
- 2) 근무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작업장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교육 조치
- 3) 방문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시 조치계획 작성 및 안내교육 실시
- 4) 화재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의 기록 조치

#### 라. 기반자료 부분

- 1)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물류창고의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 및 평면도·소방설비도 등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방재실(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등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갖춰 놓거나 전산으로 관리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 등 재난대응 기관에 제공하는 조치
- 2) 물품 보관의 적재(쌓아 둠) 형태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3) 랙, 선반 등 보관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① 랙 및 선반의 단수(세로 칸의 수)와 열수(가로 칸의 수)
  - ② 랙 및 선반의 높이, 폭, 종방향(깊이방향) 길이
  - ③ 랙 및 선반 통로의 폭 (각 랙·선반 사이의 간격)
  - ④ 랙·선반의 최상부와 천장간의 거리
- 4) 메자닌(어떤 층과 다음 층 혹은 천장과의 중간에 만들어진 기준층보다 작은 층)의 설치 여부와 적층식 랙(메자닌)의 구조적인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5)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팰릿(pallet), 보관박스 등과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재 등의 재질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6) 지하층의 면적 및 지하층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별표 2]

###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3조 관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면서 물류창고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근무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이행 한다.

#### 가. 화재예방 부분

- 1) 화재예방 및 화재 원인 조사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물류창고 내·외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나. 화재대응 부분

- 1) 공간이 넓은 물류창고의 특성과 랙·선반 등의 대형 구조물로 인해 피난동선의 신속한 파악이 곤란한 경우 물류창고 내부의 작업장과 물품적치 공간 등에 피난동선이 표시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 등의 적절한 설치 조치
- 2)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가 표시된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등의 적절한 설치 조치

#### 다. 화재대비 부분

- 1) 근무자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체계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 근무자의 출·퇴근 현황을 신속히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조치
- 2) 물류창고 건물의 관리책임이 일원화되지 않거나 임대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화재안전 조치에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한 화재예방·대응·대비 분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연1회 이상 합동 교육·훈련 실시